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7

제안년월일 : 1997. 1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조사활동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 을 정함. (안 제9조의 제4항)
- 조례의 기관 명칭중 조례와 불부합한 것은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거나 잘못 적용한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5조, 9조, 11조, 15조, 19조)

3. 참고 법령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제1호의 “당해지방자치단체”를 “충청북도”로, 제3호의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를 “조례”로 하며,

제3항중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도지사 또는 관계인”으로 하며, 제4항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가”를 “도지사 또는 관계인”으로, “지방의회의장”을 “의회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를 “도지사는 [별표1] 의 기준에 의한”으로 하고 제5항중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11조”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는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하며, 제2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도지사”로 “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의원은”을 “의원이”로 한다.

제19조중 “제12조”를 “제15조”로, “제13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